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2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에 설치하는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, 기능 및 운영,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인사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인사위원회 위원장)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.

제4조(회의소집)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의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의 임면 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
2. 총장이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을 보하고자 할 때에 그 동의에 관한 사항
3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사위원회가 정관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명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전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- 1)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- 2) 학생의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- 3)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

제6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회의록)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의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